

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

| | |
|----|---------------|
| 제정 | 2018. 10. 22. |
| 개정 | 2019. 9. 30. |
| 개정 | 2020. 11. 2. |
| 개정 | 2021. 9. 27. |
| 개정 | 2022. 2. 28. |
| 개정 | 2023. 10. 16. |
| 개정 | 2024. 10. 7.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(교육과정)에 의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)의 건학이념, 비전, 사명을 근간으로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달성하고 산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,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방향)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건학이념, 교육목표, 비전, 사명을 근간으로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.

②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각 호의 체계를 활용하여 편성한다.

1. NCS 체계(National Competency Standard,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)
2. CK-CEF 체계(ChungKang-Certificate Framework, 청강역량인증체계)

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3년 주기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, 인증유형은 개발, 개편, 유지 중 선택한다.

④ 대학의 교육과정은 스쿨(전공) 및 학과의 교육목표, 교육방침, 교육수요자(학생, 교수자, 산업체)의 요구, 산업계 변화 동향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본 규정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공 및 학과, 교양교육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② 전공 교육과정은 스쿨(전공) 및 학과,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 주관으로 개발한다.

③ 모집단위(편제정원)가 없고,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에 따라 편성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교직교과로 구분하며, 각 교과의 세부 사항은 각 호와 같다.

1. 교양교과: 교양필수, 교양선택, 스쿨교양
2. 전공교과: 전공필수, 전공선택
3. 교직교과

제5조(개발절차) ① 교육과정은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환경분석
2. 교육목표 및 역량 도출
3. 역량 적합성 검증
4. 교수요목 작성
5. 교육과정 자문

제6조(편성원칙)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, 전공교과, 교직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.

② 교육과정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며, 입학연도의 교육과정을 졸업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적변동자(복학, 전과, 유급 및 재입학자)는 학적 변동 시점의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.

③ 1학점 1시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:1 이상 편성할 수 있다.

④ 학기당 15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양 교육과정 및 학제의 마지막 학년학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⑤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편성함을 권장한다. 단, 특수사유(전공 운영상 필요한 경우, 국가고시, 전공 필수 자격증 취득, 모집정지 등)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⑥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실습과목 시수를 전체 교과목 시수 대비 50% 이상 편성한다. 단, 교양 교육과정과 특수사유(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모집정지 등)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⑦ 2년제 전공의 경우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78학점 이상, 3년제 전공의 경우 117학점 이상 교과목을 편성한다.

⑧ 현장실습 교과목은 2학점, 주당 40시수, 전공선택으로 편성하며, 세부사항은 ‘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’을 따른다.

⑨ 원격수업 교과목은 전공 전체 교육과정의 30%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양 교육과정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, 모집정지전공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7조(교양 교육과정) ① 교양 교과목은 교양필수,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.

② 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의 이수 조건은 2년제의 경우 교양필수 포함 8학점 이상, 3년제의 경우 교양 필수 포함 1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원에서 편성하며, 전공 교육과정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)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 교육과정은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 교육 기회 부여,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직무역량, 평생 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편성한다.

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3년제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37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매 학기 10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교육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.

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30% 이상 유지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한다.

⑥ 개발, 인증 모두 전문학사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산업체 위탁 교육과정) ①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은 산업체 직업기술 변화 능동적 수용, 산업체 교육 요구사항 반영 등 탄력적 편성 및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두고 편성한다

② 산업체 위탁 교육과정을 개설한 전공 대상으로 하며, 위탁산업체와의 협의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개발, 인증 모두 일반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한다.

- 제10조(기타 교육과정)** ① 대학의 창의, 융복합, 협업, 대학 정책상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편제정원이 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편제정원이 없는 교육과정은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전공(필수/선택)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③ 편제정원이 없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 및 심의 절차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얻어 총장이 정한다.

- 제11조(교육과정 인증)** ①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를 실시한다.
- ② 교육과정 인증유형은 각 호와 같다.

| 교육과정 인증 유형 | | |
|------------|----|---|
| 1 | 개발 | - 편성절차를 거쳐 교육과정 신규하는 경우 - 이전 개발인증 후 3년 경과시 - 교육목표, 인재양성유형, 스쿨역량 변경시 -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목의 30% 초과시 |
| 2 | 개편 | - 교육목표, 인재양성유형, 스쿨역량은 유지한 채로 개편 교과목수가 전체 교과목의 30% 이하인 경우 |
| 3 | 유지 | - 전년도 교육과정을 차년도에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|

- ③ 교육과정 개발(개편)은 휴학생의 재수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.

- 제12조(교육과정 인증 절차)** ① 교육과정 인증 절차는 각 호와 같다.

| 교육과정 인증 절차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1 | 교육과정 작성 및 제출 | 원장 및 학과장은 대내외 환경분석, 요구분석 기반으로 교육과정안을 작성하고, 스쿨(학과)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(안)을 제출한다. |
| 2 | 검토 및 심의 | 제출된 교육과정(안)은 교육과정혁신센터의 검토 후 교육과정혁신위원회, 교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진행한다. |
| 3 | 교육과정 확정 | 교육과정혁신위원회,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교육과정(안)은 대학 평의원회 자문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개시일 1개월 이전에 확정한다. |

- ② 교육과정 인증은 학기 운영 중에 불가함이 원칙이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
- ③ 모집정지된 스쿨의 교육과정은 개발 필요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인증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④ 확정된 교육과정의 수정은 불가함이 원칙이나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.

- 제13조(인증평가)** ①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시 위원별 인증평가표를 작성하고, 위원별 점수의 평균으로 인증평가를 심의한다.

- ② 유지 인증의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과정혁신센터에서 서면으로 점검, 심의한다.

제14조(교육품질관리) ① 대학의 교육품질관리는 교과목, 스쿨, 대학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, 각 단계별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.

| 교육품질관리 체계 | | |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|
| 1 | 교과목 | 학생 자체평가 | - 강의평가(중간, 기말)를 통해 학습목표 달성도, 학생의 요구사항 파악 |
| 2 | 교과목 | 교수자 자체평가 | - 매 학기 과목별 학습목표 달성도, 교육환경, 교육과정 운영 관련 교수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된 수업에 대한 평가, 개선사항 파악 |
| 3 | 스쿨 | 학생대상 교육과정 운영평가 | - 재학생 대상 스쿨 교육과정 편성, 운영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FGI 시행 |
| 4 | 스쿨 | 교육과정 운영평가 | - 스쿨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원장(학과장) 대상 자체평가(설문조사) 시행 |
| 5 | 스쿨 |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| - 교과목 차원의 평가(강의평가, 교수자 자체평가), 스쿨차원에서 시행된 각종 평가 결과, 교육과정 운영 현황, 만족도조사 결과 종합 분석 및 보고서 작성 |
| 6 | 대학 | 교육수요자 대상 만족도조사 | - 성과관리센터의 교육수요자 대상 만족도조사 활용 |
| 7 | 대학 | 교육과정 성과 평가 | - 신입생 충원율, 재학생 충원율, 취업률, 역량성취도 포함 |
| 8 | 대학 |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| - 교육과정혁신센터 주도로 교육과정 현황, 스쿨 교육품질관리 보고서를 분석, 종합하여 대학 차원의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작성 |

제15조(유의사항) 이 규정과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⑥ (경과조치) 제6조(유의사항) ①항의 변경은 2022년 01월 27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.
- ⑦ (경과조치) 제3조(정의) ①항의 각 호의 변경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.
- ⑧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⑨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